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39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2
※ 참고자료 : 해외 입법례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9.
3.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

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및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면서 해당 죄를 군인등¹⁾ 뿐만 아니라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적용대상자) ① ~ ③ (생략)	제1조(적용대상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 ----- ----- -----.
1. <u>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u>	1. <u>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u> -----
2. ~ 13. (생략)	2. ~ 13.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첩) ①·② (생략)	제13조(간첩)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u>사람도</u> 제1항의 형에 <u>처한다</u>. 1. ~ 3. (생략)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도 제3항의 형에 처한다. ⑤ ----- ----- -----<u>사람은</u> -----<u>처하고, 제3항 및</u> <u>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3항의 형에 처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군로역인 군인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간첩죄는 군인등이 “적을 위하여” 간첩²⁾행위를 하거나 (제13조제1항 전단; 간첩죄) “적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경우(제13조제1항 후단; 간첩방조죄), 군인등 또는 내국인·외국인³⁾이 “적에게” 군사상 기밀⁴⁾을 누설한 경우(제13조제2항; 군사상 기밀누설죄), 군인등 또는 내국인·외국인이 일정한 지역 또는 기관에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제13조제3항; 군사간첩죄) 성립하는 범죄임. 본 죄의 법정형은 간첩한 자는 사형,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의 경우에도 위 형과 같음.⁵⁾

○ 「형법」 제98조⁶⁾에서도 유사하게 간첩·간첩방조, 군사상 기밀누설에

- 2) ‘간첩’의 의미에 대하여는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으로 해석되어 왔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53 판결]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 3)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 4)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 5) 군형법 제13조제1항은 형법 제98조제1항과 달리 간첩행위와 그 방조행위의 법정형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군사상 기밀누설행위에는 방조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정범만 간첩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중범은 원칙으로 돌아가 형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조윤, “군형법 개정론”, 「사법논집 제2집」, 법원도서관, 443면/ 육·해·공군 군사법원, 군형법주해, 381면 참조)
- 6)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간첩·간첩방조죄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등 또는 일정한 지역·기관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형법」상 규정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경우, “적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적”에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거나 전쟁을 수행 중인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⁷⁾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됨.⁸⁾⁹⁾

○ 따라서 “적 이외의 자”를 위한 간첩·간첩방조·군사상 기밀누설의 경우 현행법 제13조의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음. 군인등이 적 이외의 자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현행법 제80조¹⁰⁾, 「군사기밀보호법」¹¹⁾상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등의 행위는 동법

7) [대법원 1983.03.22. 선고 82도3036 판결]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8) 「형법」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9) 박상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가을호) 중 “간첩죄에 관한 소고”, 2007, p.570

10)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15조, 공무상 또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113조 또는 제127조¹²⁾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현행법상 간첩죄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처벌되게 됨.

□ 현행 조항은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제정 형법 (1953.9.18.) 규정을 토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냉전체제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이라는 좁은 개념보다는 적대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처벌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¹³⁾

○ 특히, 최근 적이 아닌 자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하였다는

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2)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 장영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2011), p.102. 신의기,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법제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6. 12., p. 15.

사실이 알려지면서¹⁴⁾,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¹⁵⁾와 같이 간첩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 외국에 간첩을 방조한 사람 및 군사상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면서 해당 죄를 군인등¹⁶⁾ 뿐만 아니라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여 현행법상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취지임.

○ 우방국 간에도 치열하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만큼 다원화된 현대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4) “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해”, 2024.8.27. 연합뉴스 “국군 정보사령부 기밀정보 유출 군무원, 간첩법 적용 불가”, 2024.8.1., 경제포커스

15) ※ 참고자료(p.12) 해외 입법례 참조

16)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군로역인 군인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제1호17)에 따라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인·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군인등이 아닌 민간인이 외국을 위한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를 범한 경우에는 안 제1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한편,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위한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18)를 범한 경우에는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관할이 불합리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헌법19)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
- 17)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 18)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9)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사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이 외국을 위한 간첩·간첩방조 및 군사기밀 누설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현행법 제2편제2장 ‘이적의 죄’는 모두 ‘적’의 개념을 전제로 구체적 행위별 이적죄와 일반이적죄를 규정하고 있어, 적 이외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이 장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17조²⁰⁾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국에 대하여 행한 간첩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바, 처벌의 필요성·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20) 「군형법」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셋째, 적이 아닌 외국에 대한 군사·산업·영업비밀 등 누설에 대해서는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²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²²⁾,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²³⁾
 등에서 외국을 위한 경우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행위를
 현행 간첩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군사·산업·영업비밀 등 보호와 관련한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1) 「군사기밀 보호법」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
 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각 항 생략)
- 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
 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
 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
 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이하 각 항 생략).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는 외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기밀 누설 등에 대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도 규율하고 있고, 「군형법」 제80조에서도 군사기밀 누설죄를 별도로 두고 있어 기존 법체계 간 혼선이 초래될 수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제1조 내·외국인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군형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권이 인정됨으로써,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예외적으로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상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개정안과 연계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법무부는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로 추가하게 되면, 군과 관계없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모든 간첩행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군인에게 적용할 군의 범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군형법」의 입법 목적²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며, 「형법」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구성요건에

24) 군형법 제정이유(군의 기강을 확립하여 군인이 국방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군인에게만 적용할 군의 범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참조

대하여 법정형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

※ 참고자료

참고 1	해외 입법례
-------------	---------------

1. 미국

가. 간첩죄²⁵⁾

○ 미 연방법률 18편 (형법,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제37장 간첩 및 검열(Espionage and Censorship)에 따르면(제792조 내지 제799조),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 도화 등을 소지한 자가 그 사항을 누설·전달하거나 미국에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범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국방기밀의 수집과 발송(제793조)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정보’(제794조),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묘사(제795조, 제796조) ‘암호제도 등 기밀정보(제798조)’ 등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까지도 “합중국에 불리하게 또는 외국에 대하여 유리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반적인 정보수집과 누설, 공개 등 행위까지도 간첩행위로 포괄함.

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외국세력에 의한 산업스파이 활동을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법인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하여 시행함.²⁶⁾ 경제스파이법은 처벌가능한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trade secret misappropriation)를 외국 정부의 관련 여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인 경제스파이 유형(economic espionage)은 외

25) 김호정,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 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 방안”, 국가정보연구 제2권제2호(2009) pp. 144~163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함

26) 김호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외법논집 제40권제1호, 2016, p. 67.

국 정부, 기관, 관료의 이익을 위하여 절취한 경우이고, 두 번째 유형인 영업비밀절도 유형(theft of trade secrets)은 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²⁷⁾²⁸⁾

2. 독일

○ 독일의 경우 형법 제94조의 외환죄(Landesverrat)²⁹⁾가 간첩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³⁰⁾

- 형법 제93조는 국가기밀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정의함.³¹⁾
- 제94조는 국가기밀을 타국 또는 그의 중개자 중 1인에게 알리거나, 기타 독일연방공화국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타국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국가기밀을 알리거나 공표하여 이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배반죄로 처벌함.³²⁾
- 직무상 지득한 기밀 등 국가기밀의 입수경위를 묻지 않는다는 점과 누설의 상대방을 타국이라고 하여 적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27) 경제스파이 유형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50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에는 미화 1,000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절도 유형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25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단체의 경우 미화 500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8) 이윤제, “미국 경제스파이법 연구”, 법제(2007.1.), p. 148.

29) 배반, 모반 등의 의미를 가짐(번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0) 김재현, “형법상 간첩죄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2016, pp. 263~264

31) 정영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제46권제3호(2011), p. 97.

32) 김호정,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 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 방안”, 국가정보연구 제2권제2호(2009), p. 155.

3. 프랑스³³⁾

- 프랑스 형법은 이적행위의 동기를 “목적물의 이용, 누설 또는 수집이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해하는 성질을 갖는 때”로, 이적행위의 대상을 “외국정부, 외국에 속하거나 또는 외국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 또는 그 용원”으로, 이적행위를 위한 목적물을 “정보, 기법, 물품, 문서, 정보처리데이터 또는 파일”로 통일하고 있음.
-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는 인도목적 부정입수·수집(제411-7조), 취득·인도목적 활동(제411-8조), 인도·취득원조(제411-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가 국가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정부 외에 외국기업·단체를 위한 정보 등의 수집·이용·누설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

4. 중국³⁴⁾

- 중국은 형법 제111조에서 일반간첩죄를, 제110조에서 특별간첩죄를 처벌하고 있음. 일반간첩죄(제111조)는 행위의 상대방을 ‘적국’ 뿐만 아니라 ‘국경 밖의 기구, 조직, 인원’이라고 하여 외국 및 외국세력으로 확대하고 있음.
- 행위객체는 ‘국가기밀 또는 정보’라고 하여 국가기밀에 한정하지 않으며 행위태양에 관하여도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으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간첩조직 가담·활동’과 ‘폭격목표 고지’ 등의 행위로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경우를 특별간첩죄(제110조)로 처벌하고 있음.

5. 오스트리아³⁵⁾

- 오스트리아 형법은 독일 형법과 같이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제255조)을 두고 있으며 ‘외국세력’ 및 ‘초국가적·국가 간 기구’ 등을 위한

33) 정영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제46권제3호(2011), p. 96.

34) 정영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경희법학 제46권제3호(2011), p. 95.

35) 김호정,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외법논집 제40권제1호, 2016, pp. 70~71.

국가기밀 누설 및 탐지로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
(제252조 내지 제255조).